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863

발의연월일: 2022. 8. 16.

발 의 자:주철현・위성곤・윤재갑

민병덕 • 이병훈 • 송기헌

정일영 · 우원식 · 이동주

임종성 · 서삼석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.

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(이하 "대부등"이라 함)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・인가・승인・지정・등록・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 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전단 중 "받은 자"를 "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"로, "받은 산림"을 "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"받은 자"를 "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"로, "받은 산림"을 "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	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	②	
유림의 소유자(사용・수익할		
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		
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) 또		
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		
가(이하 "대부등"이라 한다)를		
<u>받은 자</u> 의 지정 신청에 따라	-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	
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	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	
을 <u>받은 산림</u> 을 자연휴양림으		
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	<u>받은 산림(받</u>	
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	<u> 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</u>	
식품부령으로 정한다.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
제20조(산림욕장등의 조성) ①	제20조(산림욕장등의 조성) ①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
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	2	
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<u>받</u>	<u>반</u>	
<u>은 자</u> 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	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	
등을 <u>받은 산림</u> 을 산림욕장등	<u>이하 제32조에서 같다)</u>	

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		<u>받은</u>	<u>산</u>
림(받으려는	산림을	포함한	다)-
\bigcirc \bigcirc \bigcirc \bigcirc \bigcirc \bigcirc	B 해 라 기	<u> </u>	

③ ~ ⑦ (생 략)